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의 정관 제2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 일시: 2024년 3월 22일(금) 오전 9시
- 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공원로4길 27,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 회의목적
  -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제24기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이익배당예정: 1주당 현금배당 300원)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지1 참조
      - 제2-1호: 주식 관련 (제8조의2, 제15조, 제18조의2)
      - 제2-2호: 사채 관련 (제20조, 제21조, 제22조)
      - 제2-3호: 주주총회 관련 (제24조)
      - 제2-4호: 감사위원회 관련 (제48조)
      - 제2-5호: 회계 관련 (제51조, 제56조)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김태영 재선임) (\*)별지2 참조
    - 제4호 의안: 이사회에서 기 결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임원보수한도 승인의 건
-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사항을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님들께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안내]**
  -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4년 3월 12일 ~ 21일 (공휴일 포함, 10일간)
    - 개시일 오전 9시부터 종료일 오후 5시까지 (개시일/종료일 이외,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 인증서를 통해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서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지참), 대리인 신분증

2024년 3월 5일

주식회사 웹젠 대표이사 김태영

별지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제8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좌동)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준정관 반영, 조문 정비
제15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제15조(신주의 동등배당)	조문정비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표준정관 반영, 조문 정비
(신설)	제18조의2(주주명부의 작성·비치)	표준정관 반영 신설
(신설)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표준정관 반영 신설
(신설)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표준정관 반영 신설
(신설)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표준정관 반영 신설
제20조(전환사채의 발행)	(좌동)	
① 당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단, 아래 2호 내지 4호의 경우 그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20% 이내로 한다.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표준정관 반영, 조문 정비, 발행 한도 변경
1. (생략)	1. (좌동)	
2.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배정, 발행하는 경우와 신기술사업금융 및 창업투자업무를 영위하는 국내법인에게 전환사채를 배정,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표준정관 반영, 조문 정비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표준정관 반영, 조문 정비
4. (생략)	(삭제)	조문 정비
② (생략)	(삭제)	조문 정비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표준정관 반영, 조문 정비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표준정관 반영, 조문 정비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표준정관 반영, 조문 정비
제21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좌동)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20조 제1항 각호에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준정관 반영, 조문 정비, 발행 한도 변경

현행	개정	비고
해당하는 경우 <u>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단, 2호 내지 4호의 경우 그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20% 이내로 한다.</u>	경우 <u>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u>	
(신설)	1. <u>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	표준정관 반영, 조문 정비
(신설)	2. <u>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	표준정관 반영, 조문 정비
(신설)	3. <u>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	표준정관 반영, 조문 정비
② (생략)	② (좌동)	
③ <u>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은 보통주식,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u>	③ <u>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u>	표준정관 반영, 조문 정비
④ <u>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u>	④ <u>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u>	표준정관 반영, 조문 정비
⑤ <u>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 및 이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	⑤ <u>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	표준정관 반영, 조문 정비
제22조(교환사채의 발행)	(좌동)	
① <u>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u>	① <u>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u>	- 발행 한도 변경
② (생략)	② (좌동)	
제24조(소집시기)	(좌동)	
① <u>당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u>	<u>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u>	표준정관 반영, 조문 정비
② <u>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u>		
제48조(위원장의 선임과 위원의 해임)	제48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조문정비
<u>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u>	<u>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u>	표준정관 반영, 조문 정비
제51조(영업년도)	제51조(사업년도)	조문정비
<u>당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매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u>	<u>당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u>	표준정관 반영, 조문 정비
제56조(분기배당)	(좌동)	
①~③ (생략)	①~③ (좌동)	
1.~7. (생략)	1.~7. (좌동)	
④ <u>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u>	④ <u>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u>	표준정관 반영, 조문 정비
⑤ (생략)	⑤ (좌동)	

**별지 2.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김태영 재선임)**

[사내이사 후보자 세부 사항]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태영	1973.06.06	해당사항 없음	발행회사 임원	이사회

후보자 성명	주된 직업	세부경력 (최근 10년간)		해당법인과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태영	現) ㈜웹젠 대표이사	2012.06 ~ 현재	(주)웹젠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후보자 성명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유무
김태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p>상기 후보자(김태영)는 회사경영 및 사업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서, 지난 재직기간 동안 뛰어난 업무성과를 보여주었기에 사내이사로 추천합니다.</p>	

# 주주총회 위임장

본인은 2024년 3월 22일(금)에 개최하는 ㈜웹젠의 제24기 정기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에서 권유자 ㈜웹젠이 지정하는 오윤희/정연환 중 1인을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 1. 의결권 위임 세부 내용

주주 번호:		의결권 있는 주식 수:	주
소유 주식 수:	주	의결권 위임할 주식 수:	주

## 2.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찬반 여부 (○표 혹은 √표)

구분	주주총회 목적사항	찬성	반대
제1호 의안	제24기(2023.01.01~2023.12.31)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이익배당예정: 1주당 현금배당금 300원)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주식 관련 (제8조의2, 제15조, 제18조의2)		
제2-2호	사채 관련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호	주주총회 관련 (제24조)		
제2-4호	감사위원회 관련 (제48조)		
제2-5호	회계 관련 (제51조, 제56조)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김태영 재선임)		
제4호 의안	이사회에서 기 결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임원보수한도 승인의 건		

## 3.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위임

-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에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지 시 내 용

주 주 명: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년    월    일    시

주식회사 웹젠 귀중